[별지 제29호의5서식]<신설 1997.9.23>

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

저축가입자	①성 명		②주민등록번호	-
	③주 소	(☎ -)		
근무처	④상 호		⑤사업자등록번호	- -
	⑥근무처 소재지	(☎ -)		
	⑦재직기간	. . . ~ . . . (년 개월)		
⑧ 연간 총급여액				

위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5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근로소득원천징수의무자(납세조합) [인]

※작성요령 : 연간 총급여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산합니다.

1. 당해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이상 근속한 경우 : 직전월까지 1년간 총급여액

2. 당해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미만 근속한 경우 :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. 이 경우 1월미만에 해당하는 기간과 총급여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함.

3. 당해근로자가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월미만 근속하거나 저축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취업한 경우 : 저축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받거나 받기로 한 총 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

※ 이 확인서는 확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유효합니다.

22226-24611일
1997.8.22승인
210㎜×297㎜
(신문용지 54g/㎡)